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복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심급별 소송비용 지원 한도가 실제 법률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. 법률환경 변화와 비용 현실화를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
(안 제3조제3항)
- 소송비용 지급 기준 등 정비(안 별표 1 및 별표 2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3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036-8953
 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조례 제 호

##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전단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 제1호 중 “550만원”을 “한도 금액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소송비용 지급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### 1. 착수금

구분 소송별	지 급 기 준		소송비용 청구서 구비서류	
	사 건 별	착 수 금		
행정 · 민사 소송	가. 신청사건		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	• 청구서
	나. 본안사건	(1)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	150만원 이내	• 청구서 • 소가증명원 •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
		(2)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	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 및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 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 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 만, 최대 지급액은 1,000만 원으로 한다.	
	다. 환송심		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	
심판 사건 등 기타	가.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 사건 등 기타	(1) 일반사건	150만원 이내	• 청구서
		(2) 사실관계 또 는 법리적 쟁점 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	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	

※ 실질적인 변론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※ 신청사건 및 심판사건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만 지급한다.

※ 소송물가액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,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 2. 승소사례금

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	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
<p>가.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(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)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,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나. 청구의 포기, 인낙, 소 취하(쌍방취하를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. 다만, 변론 없이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다. 최종 승소한 사건 중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른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. 다만,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그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라.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수임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구서</li> <li>•사건확정증명원</li> <li>•소취하서 중 해당서류</li> </ul>

## 3. 기타비용

지 급 기 준	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지대 : 실액</li> <li>• 송달료 : 실액</li> <li>• 검증비 : 실액</li> <li>• 감정료 : 실액</li> <li>• 기타 비용 : 실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구서</li> <li>•인지·송달료의 납입영수증</li> <li>•검증비·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</li> </ul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소송비용 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<u>1천만원</u>의 범위에서 지원하며,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.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소송비용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2천만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